

제 호

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

기관명칭 :

소재지 :

대표자 : 생년월일 :

위 기관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9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(1차·2차)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과학기술부장관 [인]